###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741

제출연월일: 2021. 05. 03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(필수조례 적기 마련) 정비 대상 [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워팀-99(2021.1.22.)호와 관련]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 사항 조례 반영
  - 1)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(안 제12조)
  - 2)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(안 제14조)
    - 가) 협의회 구성: 의장, 부의장 포함 7명 이상 ~ 15명 이하
    - 나) 구청장(의장), 중구체육회장 포함 구성
  - 3)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등 운영 (안 제15조 ~ 제20조)
    - 가) 위원 임기 2년, 정기회의 연1회 개최, 간사 등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규정 정비
  - 생활체육교실 강사 위촉 규정 정비 및 준용규정 삭제
    (안 제2조, 제8조, 제11조)

- 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 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5조 (지역체육진흥협의회)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반영[여성가족과-12717호(2021. 3. 25.)]
  - 아동, 청소년, 성인 등 아동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국민체육시설 이용 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신청제한 개선안을 권고함 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신청 제한 유지
- 라. 입법예고: 2021. 3. 22. ~ 4. 12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용어의 정리)"를 "(용어의 정의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사람"을 "자"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강사의 위촉 등)"을 "(자원봉사자 활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 항 중 "의 효율적 운영을"을 "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"로, "전문성을 갖춘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"를 "자원봉사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지도강사"를 "자원봉사자"로, "강사료"를 "실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구청장은 강사"를 "자원봉사자"로, "즉시 그 강사를 위촉 해제할수 있다"를 "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없다"로 하며, 같은 항 중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 중 "제5조제2항"을 "제5조"로, "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를 "둔다"로 한다.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호선한다"를 "선출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 1조에 따른다.
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- 2. 중구체육회장

- 3. 중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
- 4. 체육관련 기관·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- 5.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
- 7. 주민자치국장
- 제15조제2항 중 "사고가 있을 때에는"을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하되, 연임할 수 있다"를 "한다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반기별로"를 "연(年)"으로, "때"를 "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3 항 중 "개회하고"를 "개회(開會)하고"로 한다.

제18조 제목 "(간사 등)"을 "(간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에 협의회의"로, "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"을 "처리할 간사 1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"를 "으로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리) 이 조례에서 사	제2조(용어의 정의)
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·.
1.・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"생활체육동호인조직"이란 생활	3
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	
는 <u>사람</u> 의 모임을 말한다.	<u>자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(강사의 위촉 등) ① 구청장은	제8조 <u>(자원봉사자 활용)</u> ①
제4조제7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	
(이하 "교실"이라 한다) <u>의 효율</u>	<u>을 효율</u>
<u>적 운영을</u> 위하여 해당 종목에 <u>전</u>	적으로 운영하기
문성을 갖춘 지도강사를 위촉하거	<u>자원봉사자</u>
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	<del></del> .
② <u>지도강사</u>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	② <u>자원봉사자</u>
서 <u>강사료</u> 를 지급할 수 있다.	<u>실비</u>
③ <u>구청장은 강사</u> 가 다음 각 호의	③ <u>자원봉사자</u>
어느 하나에 해당 된 경우에는 <u>즉시</u>	<u>자원봉</u>
그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사 신청을 할 수 없다.
1.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	
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	<u>&lt;</u> 삭 제>
2.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	
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	
	<u>&lt;</u> 삭 제>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, 를,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 다.

제12조(설치)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 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 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 은 어느 한 쪽의 성(性)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한다.

-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이 포함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2조(설치)	
제5조	
<u>둔다.</u>	

제14조(구성) ① 구청장은 협의회를 제1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----- 선출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 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「양성 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다.
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

되어야 한다.

제15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(생 략)

-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6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의 제16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------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(생략)
- 제17조(회의) ① (생 략)
  -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 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소집한다.
  -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 (<u>간사 등</u>) ① <u>협의회의</u> 사무를 제18조 (<u>간사</u>) ① <u>협의회에 협의회의</u>

하는 구의원

- 2. 중구체육회장
- 3. 중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
- 4. 체육관련 기관·단체로 부터 추 천을 받은 사람
- 5.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
- 6.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 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
- 7. 주민자치국장
- 제15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  - ② 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--.
  - ----- 한다.
    - ② (현행과 같음)
- | 제17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  - ② ----- 연(年)-----

  - ---- 경우 ----.
  - (3) -----
  - 개회(開會)하고-----
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 ---- 처리할 간사 1명을 ----. 다.

-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 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 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 야 한다.

제19조 (수당 등)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(<u>2</u>) -------으로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# 근 거 법 규

# 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<개정 2020. 12. 8.>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20. 12. 8.> [시행일 : 2021. 6. 9]

#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
 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 법」개정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시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-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 3. 작성자

○ 소 속: 혁신교육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

○ 성 명: 오석원

○ 연락처: (052)290-3671